

대만 산업보건 국제 심포지엄 참가 국외출장 계획

1. 목 적

- 대만 산업안전보건청(OSHA 주최)/산업안전보건협회(ISHA 주관)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구조 전환』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

※ **대만 산업안전보건협회 발제 요청(조정비 부담)**

- 한국의 섬유 제조업 및 염색가공업 종사 노동자 대상 직업병 예방 사업 및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업무상 질병 예방대책을 소개하여 대만의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출장 개요

- 출장일자 : '19. 6. 11(화) ~ 12(수)
- 참가행사 : 대만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구조 전환 국제 심포지엄
- 주최기관 : 대만 노동부, 대만 산업안전보건청(OSHA) 및 대만 산업안전보건협회(ISHA)
- 출 장 지 : 대만 타오위안 시
- 출 장 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김은아 실장

3. 중점 수행사항

- 『한국 섬유 제조·염색가공업 노동자 직업병 예방 대책』 기조연설
- 염색가공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 대책 토론 패널 참석

4. 세부 일정

일 시	수 행 사 항
6. 11(화)	○ 이 동 (부산 → 대만 타오위안)
6. 12(화)	○ `한국 섬유제조업 노동자 직업병 예방 사업` 기초연설 ○ 염색가공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 대책 토론 패널 참석 ○ 이 동 (대만 타오위안 → 부산)

5. 행정 사항

- '19년도 국제협력센터 사업계획 중 「국제세미나 참석, 안전보건 전문기관과의 교류 등」의 사업으로 실시
-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및 사례금(참석수당 및 발표수당)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
- 주최 측에서 항공권을 제공하므로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승급 불필요. 단, 출장 후 항공마일리지는 등록
- 국내운임(근무지 → 김해공항)은 출장자의 소속기관 국내여비로 처리
- 출장자는 출발전 'ERP/공통/국외출장 신청 및 조회'에 출장정보 입력. 복귀 후 마일리지 적립내용 신고 철저
-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절차 준수

【별첨 1】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신고서 제출)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 (이관)

고용노동부장관

↓ (재이관)

인사혁신처장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실로 제출**
 -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유지
 -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관**
 -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 사진, 규격서 등 첨부

- 이관 받은 선물을 인사혁신처로 재이관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